

위법계약 해지 요구서

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에 의거, 금융소비자는 회사와 체결한 위법 계약에 대해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하기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유의사항

- 금융소비자가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.
- 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 해지를 거절할 경우,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.
-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, 위약금 등 계약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■ 고객정보

고객명		생년월일	
계좌번호		연락처	

■ 계약해지 상품 및 사유

대상 상품명			
계약 체결일			
계약해지 사유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성 원칙 위반 (금소법 § 17 ③)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정성 원칙 위반 (금소법 § 18 ②)	
	<input type="checkbox"/> 설명의무 위반 (금소법 § 19 ①, ③)	<input type="checkbox"/> 불공정영업행위 (금소법 § 20 ①)	
	<input type="checkbox"/> 부당권유금지 위반 (금소법 § 21)		

■ 계약해지 사유 근거

증빙(참고)자료	※ 필요 시 별도 첨부
----------	--------------

본인은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
상기와 같이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_____ (인)